

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6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9. 12.
제 출 자 : 중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- 「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(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추가에 울산구치소장, 울산보훈지청장 (안 제2조제2항제10호, 제11호)
-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(안 제7조 ~ 제9조)

3. 근거법규

-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
-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제8조

4. 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 : 해당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라.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16. 7. 11. ~ 2016. 8. 1.(의견 없었음)
- 마. 조례규칙심의회 : 원안가결

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15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제2항 제7호 중 “국가정보원 울산출장소장”을 “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장”으로 하고, “제10호”를 “제12호”로 하고,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울산구치소장
11. 울산보훈지청장

제7조제3항 중 “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”을 “운영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체류자에 대하여”를 “체류자에게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”을 “운영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협회의의 구성 및 위원임기) ① 울산 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<u>15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의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<u>각호</u>에 정한 자로 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국가정보원 <u>울산출장소장</u>이 추천하는 관계자</p> <p>8. ~ 9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10.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</p> <p>제7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<u>운영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(동단위 지원본부 포함 한다)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</p>	<p>제2조(협회의의 구성 및 위원임기) ① ----- ----- ----- <u>20명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각 호 ----- 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<u>울산지역본부장</u> -----</p> <p>8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울산구치소장</u></p> <p>11. <u>울산보훈지청장</u></p> <p>12. (현행 제10호와 같음)</p> <p>제7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운영에</u> 관한 사항 -----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대피명령) ① 협의회 의장은 통합 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의회에 그 사실을 통고하고 인명·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전지역 안에 있는 주민이나 <u>체류자</u>에 대하여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제9조(운영규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협의회 <u>운영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 다만, 통합방위사태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역통합방위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대피명령) ① ----- ----- ----- <u>체류자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9조(운영규칙) ----- ----- <u>운영에</u> 관한 사항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(의안번호 1263)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6. 9. 9.(금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6. 9. 13.(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6. 9. 22.(목)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 : 김성규 행정지원국장)

-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(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추가에 울산구치소장, 울산보훈지청장 (안 제2조제2항제10호, 제11호)
-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(안 제7조 ~ 제9조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(검토보고자 : 전문위원 강기환)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「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기준」이 개정되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
- 사전에 입법예고를 실시(7. 11.~8. 1.)하여 주민의견을 들었으며,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,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